

가점제 당첨자 구비서류 안내

■ 가점제 당첨자 구비서류

| 구분 | 서류유형 | | 해당 서류 | 발급 기준 | 구비서류 |
|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| 필수 | 추가 (해당자) | | | |
| 공동 서류 | ○ | | 신분증 | 본인 |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 |
| | ○ | |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| 본인 |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|
| | ○ | | 주민등록표 등본 | 본인 | 주민등록번호(세대원포함)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|
| | ○ | | 주민등록표 초본 | 본인 | 주민등록번호(세대원포함), 주소변동사항·사유 및 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포함하여 발급 |
| | | ○ | 주민등록 등본 | 배우자 |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세대인 경우 (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) |
| | ○ | 출입국사실 증명원 | 본인 |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4조제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| |
| 일반 공급 | | ○ | 가족관계 증명서 | 본인 |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, 배우자 유무 확인 불가 시 |
| | | ○ | 주민등록표 초본 | 직계존속 | 주민등록표초본 : 직계 존속·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직계존속 : 동일 주민등록표등본 상 3년 이상 거주 |
| | | ○ | 주민등록표 초본 | 직계비속 | 주민등록표초본 : 직계 존속·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만 30세이상 직계비속,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이상 계속하여, 입주자 저축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 등재 |
| | | ○ | 혼인관계 증명서 | 본인 | 혼인관계증명서(만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하는 경우 |
| | ○ | 혼인관계 증명서 | 직계비속 |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경우 | |
| 대리 | | ○ | 인감도장 | 계약자 | |
| | | ○ | 인감증명서 | 계약자 | |
| | | ○ | 대리인 신분증 | 대리인 | |
| | | ○ | 대리인 인장 | 대리인 | |
|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| | ○ | | |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(가옥대장등본 포함) |
| | | ○ | | | 무허가건축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|
| | | ○ | | | 소형·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(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) |
| | | ○ | | |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|
| | | ○ | | |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|

※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(2018.12.21)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,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(단,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,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)
 ※ 주민등록 등·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,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
 ※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(배우자, 직계존·비속 포함)으로 간주합니다.